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업무상 질병의 판단 기준에
기후위기에 따른 작업환경의 변화 명시 등 〉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263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한 석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업무상 질병의 판단 기준에 기후위기에 따른 작업환경의 변화 명시 등	2

I. 제안경위

2026년 1월 22일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질병을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규정하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하여 작업환경이 변화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환경 변화가 반복적·누적적인 방식으로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그 노출 특성이 업무상 질병 판단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작업환경 변화는 사고보다는 질병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현행 유해요인 중심의 규정만으로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업무상 질병의 판단 기준에 있어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작업환경의 변화를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요인의 하나로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사업 범위에 기후위기에 따른 작업환경의 변화와 업무상 질병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5호의6 신설,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Ⅲ. 검토의견

1. 업무상 질병의 판단 기준에 기후위기에 따른 작업환경의 변화 명시 등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① 근로복지공단의 사업 내용에 ‘기후위기에 따른 작업환경의 변화와 업무상 질병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를 추가하고, ②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현재 명시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더하여 ‘기후위기에 따른 작업환경의 변화’를 추가하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5의5. (생략) <u><신설></u>	제11조(공단의 사업) ① ----- -----. 1. ~ 5의5. (현행과 같음) <u>5의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의 기후위기(이하 “기후위기”라 한다)에 따른 작업환경의 변화</u>

6. ~ 8. (생략) ② ~ ⑤ (생략)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u>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u>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 라. (생략) 3. (생략) ② ~ ⑤ (생략)	<u>와 업무상 질병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u> 6.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 -----<u>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기후위기에 따른 작업환경의 변화</u>----- ----- ----- 나. ~ 라.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최근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바, 개정안

은 근로복지공단이 기후위기에 따른 작업환경의 변화와 업무상 질병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업무상 질병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기후위기에 따른 작업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

‘기후위기에 따른 작업환경의 변화’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에 포섭될 여지가 있으나, 기후위기에 따른 영향이 누적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이를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한 폭염일수 증가로 인해 직접적으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최근 급증하였을 뿐 아니라 기후위기에 수반되는 대기오염 등도 산업재해를 증가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등 앞으로의 산업재해의 판단에 있어서 기후위기를 감안할 필요가 있는바 개정안은 앞으로 업무상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환경 변화에 대한 고려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현행 법령상으로도 공단의 사업에 ‘업무상 질병 관련 연구’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폭염·한파 등 작업환경으로 인한 온열·한랭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있는 바¹⁾ 기후위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개정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작업환경의 변화’라는 표현의 추상성으로 인한 인과관계 판단에의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12호 바목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 사목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저체온증’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8